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59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박지원

박해철 • 박희승 • 정태호

박균택 · 한정애 · 오세희

윤건영 · 강준형 · 김남근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기관·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 다.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화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개발
 - 2. 제26조제2호에 따른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페기단계 등의 전 과정에서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
 - 3. 제26조제6호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위한 지원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을 위하여 재료와 제품 및 그 원료물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3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3(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을 "전 과정에서 환경부하를 계량화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및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6.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운영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 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적표지 작성 지침의 개발 2. 제26조제2호에 따른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전 과정에서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 3. 제26조제6호에 따른 환경성 적표지 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의 개발을 위하여 재료와 제품 및 그 원료물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신 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 한 사유에 대해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3 에 따른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 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 다.

제18조의3(전과정목록 데이터 개 발 자문위원회) ①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등의 지원) -----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u>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u>

3. ~ 5. (생 략) <u><신 설></u>

<u>6.</u>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ને નેગોડો એગ મ
<u>전 과정에서 환경 부</u>
하를 계량화한 전과정목록 데
이터 및 환경성분석기법의 개
<u>발</u>
 3.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위한 지원
<u>7.</u> (현행 제6호와 같음)